

## 제19장 분쟁해결

### 제19.1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협의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 제19.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9.6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피소 당사국이란 제19.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 제19.3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는
- 나.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 3)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또는 불합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제2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3장(정부조달)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 제19.4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 제19.5조 해석규칙

1.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해석된다는데 합의한다.
2.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 제19.6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제19.3조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모든 이견은 가능한 한 양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19.3조에 기술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를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요청에 답변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4. 각 당사국은,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성질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밀로 하며, 모든 추가 절차에서 어느 쪽 당사국의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19.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19.8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으로 보내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또는
  -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2.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달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다음을 적시한다.
  - 가. 문제가 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 조치
  - 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 그리고
  - 다. 제소의 사실적 근거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을 선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가.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 일 수 있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중재패널의 의장인 세 번째 중재인으로 임명하기 위한 최대 3인의 후보 명부를 제공한다.
  - 다. 양 당사국은 나호에 따라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공동 합의로 임명한다.
  - 라.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통상적인 주거를 가지지 아니하는 비당사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 마.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남아 있는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나호에 규정된 후보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5. 모든 중재인은,
  -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분쟁중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분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립된 중재인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6.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제4항에 따라 마지막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중재인은 원래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 중재인이 임명되는 동안 중단된다.

8. 제19.13조부터 제19.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 원래의 중재패널과 동일한 중재인을 둔다. 이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 중재인이 원래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원래의 중재패널의 의장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제19.9조 중재패널의 기능

1. 중재패널은,

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1) 사건의 사실관계
- 2)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 3) 이 협정에의 합치성, 그리고

나.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사와 판정을 한다.

2.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3.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근거와 함께 제19.11조제2항과 제

19.11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판정 및 적용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며, 제 19.11조제2항과 제19.11조제7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9.10조 절차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2.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이 장과 부속서 19-가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총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총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중재인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양 당사국은 그렇게 취득된 모든 정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제19.11조 중재패널 보고서

1. 중재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45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최초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실 조사결과

나. 다음에 대한 중재패널의 판정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2)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19.3조나호3목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다. 중재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쟁점에 대한 패널의 판정, 그리고

라. 조사결과와 판정의 근거

3.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 19.10조제4항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나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예외적인 경우, 중재패널이 제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8. 중재패널은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9.3조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판정에서 불합치 제거 또는 무효화나 침해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9.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비밀 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공문서로 공개한다.

### 제19.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중재패널이 자신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은 재개된다. 중재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3.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재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제19.13조 이행

1. 중재패널이 제19.11조제8항에 따라 조사결과와 판정을 내린 경우, 피소 당사국은 즉시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따른다. 즉시 따르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소 당사국은 조사결과와 판정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수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다.

2.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19.8조제8항에 따라 원래의 중재패널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에 따라 합리적 기간을 결정한다.

3. 중재패널은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보고서는 합리적 기간과 판정의 근거에 관한 중재패널의 판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 제19.14조 합리적 기간 내 준수

1.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 기간의 종료 전에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합리적 기간 내에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 합의성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제 19.8조제8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래의 중재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3.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19.15조

#### 불이행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합리적 기간의 만료 이전에 피소 당사국이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제19.1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이 조사결과와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제19.14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소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보상 조정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청의 접수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접수로부터 30일 후 그러한 혜택 정지를 시작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항에서 발생하는 혜택의 정지 권한은 중재패널이 제4항에 따라 설치되었고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할 야기한다고 판정한 조치나 그 밖의 사안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한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알리는 통지에는 그 결정이 근거한 사유를 적시한다.

4.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반대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의 중재패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요청일부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판정을 포함한 단일의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에 따라 혜택의 정지 수준을 수정한다.

6. 이 조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권리가 행사된 경우,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혜택의 수준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제소 당사국은 혜택의 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7. 보상과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다.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의 정지도 중재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의 완전한 준수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보상과 혜택의 정지는, 이 협정상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이 협정과 합치하도록 개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달리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 제19.16조 검토

1. 양 당사국이 제19.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 합치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요청된 중재패널에 회부되어 결정된다.

2. 그러한 요청은 다음 중 이른 시기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 또는

나. 제19.13조의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피소 당사국의 제소 당사국에 대한 통보의 접수일

3.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의 중재패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4. 이 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이러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지연은 15일의 추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피소 당사국이 제19.13조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19.15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모든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 제19.17조 비용

사안의 특정한 정황을 이유로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의 비용과 중재패널 절차의 수행에 수반되는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1. 이 규칙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이해된다.

### 통보

2.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또는 전자 전송 또는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통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제공한다. 서면 통지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당사국의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 중재의 개시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기준을 따르는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회합은 직접 대면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컴퓨터 연결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수행될 수 있다.

### 일정표

7.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15일 이내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8. 중재패널 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을 위하여 정확한 마감기한을 정하고, 양 당사국은 그 기한을 존중한다. 서면 입장에서 양 당사국은 사안의 사실과 자국의 주장을 기술한다.

9.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재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 중재패널의 운영

10. 중재패널의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위원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12. 모든 결정과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의 배타적 책임으로 유지된다.

13. 이 규칙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중재패널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보조인 또는 지정된 기록원을 보유할 수 있다.

15. 중재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중재패널의 위원 및 제14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중재패널절차 및 심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 심리

16. 의장은 양 당사국과 중재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sup>1</sup> 의장은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심리를 소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피소 당사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18.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추가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19.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에 임석한다.<sup>2</sup>

20.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심리에 참석할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sup>1</sup>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원래의 중재패널 의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up>2</sup> 제19.8조제8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원래의 중재패널 의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중재패널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또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패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한 사유로 결정하는 경우, 심리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로 개최된다.

22.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재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23.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쪽 당사국에게든 직접 질의할 수 있다.

24. 각 당사국은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정하는 심리 이후 특정 시일 내에 그들의 구두 진술의 서면본을 중재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서면질의*

25.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절차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한쪽 당사국에게만 질의하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질의의 사본을 제공한다.

26. 중재패널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은 한쪽 당사국은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정한 일정표에 따라 서면 답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중재패널에게 전달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 *비밀유지*

27. 제21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심리를 비공개 회의로 개최하는 한도에서,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심리를 비밀로 유지한다.

28. 각 당사국은,

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9.10조에 의한 중재패널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29.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심리 후 15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또한 제공한다.

30. 이 규칙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일방적 의사전달 금지*

3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3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중재인과도 접촉하지 아니한다.

33.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중재패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지 아니한다.

#### *외부조언자 입장*

34.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영역 내의 인 및 단체와 양 당사국 영역 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단체로부터 외부조언자 입장을 수락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35. 그러한 모든 입장은,

가. 중재패널 설치 후 특정 일수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일수는 제7항에 따라 중재패널이 정한다.

나.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중재패널이 검토중인 사실적 및 법적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36. 그 입장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중재패널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7.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한 모든 외부조언자 입장의 사본을 양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신이 접수한 위 규칙의 규정에 합치하는 모든 외부조언자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이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 *기간 계산*

38. 특정 날짜 또는 사건 전, 후 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이 장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어떤 사안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중재패널이 어떤 사안의 완료를 요구하

는 경우,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9.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하는 날과 다른 날에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간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